

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		
	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조 문 희(02-2100-2841)	담 당 자	조남훈 사무관(02-2100-2872) 한필윤 사무관(02-2100-2859)
	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	이소민 사무관(02-2100-2676)
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	신용진 사무관(02-2100-2644)
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	김종식 사무관(02-2100-2974) 조윤수 사무관(02-2100-2975)
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병 칠(02-3145-7120)		김부곤 부국장(02-3145-7125) 이석주 팀 장(02-3145-7130) 이수인 팀 장(02-3145-7135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박 용 호(02-3145-7570)		권영발 팀 장(02-3145-7611) 이정두 팀 장(02-3145-7616) 이동규 팀 장(02-3145-7590)
	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주 현(02-3145-6700)		송현철 팀 장(02-3145-6710)
	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길 성(02-3145-7500)		박상현 팀 장(02-3145-7502)

제 목 : '21.11.12. 금융위원회,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

- ◆ 금융위원회(고승범 위원장)는 11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**31건**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→ 현재까지 **총 185건** 지정
 -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**2건의 지정기간 연장**도 결정
- ◆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**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 출시일**로 변경 추진

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(31건)

①②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(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*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
*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

[특례 내용]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,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

-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른 5가지 방법*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,

*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, ② 영상통화,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,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, ⑤ 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(생체인증 등)

→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(영상통화를 대체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-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,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2년 5월(한국투자증권), '22년 6월(미래에셋증권)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③~⑥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
(BNK자산운용, 교보증권, 키움증권, 현대차증권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·선물하고, 동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 내용] 자본시장법 제11조

-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,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,
→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-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2년 2월(키움증권), '22년 5월(교보증권), '22년 6월(현대차증권), '22년 7월(BNK자산운용)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7~27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

(한국예탁결제원, DB금융투자, KB증권, KTB투자증권, NH투자증권, 교보증권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카카오페이증권, 키움증권, 토스증권, 하나금융투자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(HTS, MTS 등)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*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*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

[특례 내용]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

-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,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하나,

→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,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※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자기자산을 활용하고 그 손익이 증권사에 귀속되는 본 건 거래구조상 투자매매업 해당 소지가 있으므로,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부 증권사(토스증권, 카카오페이증권)에 대하여서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도 인정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-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,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,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.

28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(신한카드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*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.

*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

[특례 내용]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

-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, 비대면 실명확인시 「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」에 따른 5가지 방법*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,

*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~④에 준하는 방식(생체인증 등)

→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(영상통화를 대체)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-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,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2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(비바리퍼블리카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, 비금융·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 내용]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,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

-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(이하, '선불업자')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,
-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,
→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,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,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-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,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,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 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3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(벨소프트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 내용]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(별표3)

-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,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, 외국인 관광객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식 선불카드만 발급 가능하나,
→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(원화 140만원 상당*) 등을 감안,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가 상향(50만원→100만원) 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* 문체부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

[기대 효과]

-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,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31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(한국신용데이터)

[서비스 주요내용]

-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(선정산) 해주고,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(PG사)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.

[특례 내용]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

-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*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,

*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

-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기대 효과]

-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[향후 일정]

- '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.

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·선물 서비스 (신한금융투자)

[서비스 개요] ('19.12.18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·선물하고,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- (특례내용) 자본시장법 제11조
 -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→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·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] ('21.12.18. ~ '23.12.17.)
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②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(트루테크놀로지스)

[서비스 개요] ('19.12.18. 지정)

- (서비스 주요내용)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,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입니다.
- (특례내용)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
 -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·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 →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.

[지정기간 연장내용] ('21.12.18. ~ '23.12.17.)

-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·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.

3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

□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-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 당일 부터 시작되어,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되었으나,
- 금번 변경에 따라,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

*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에 따른 지정기간 예시(2년 지정 가정)

구 분	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	서비스 출시일	지정기간 만료
기 존	'22.1.1.	'22.6.1.	'23.12.31.
변 경	'22.1.1.	'22.6.1.	'24.5.31.

-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,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 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